

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58호(2015.11.19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-89호(2019.06.13.)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-200호(2019.12.26.)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1-46호(2021.03.18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1년 05월 27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 :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
 - 나. 시행면적 : 11,188.1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명 칭 :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 - 나. 주된사무소의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길 31
 - 다. 대표자 성명 : 조중현
 - 라. 대표자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길 31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년
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1.05.20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

구분	세 부 내 역		
토지	필지수	면적	권리자수
	1	11,188.10㎡	161인
건축물	동수	연면적	권리자수
	4	10,164.54㎡	161인

7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가. 구역면적 : 11,188.10㎡(대지면적 : 10,488.10㎡)

나. 건 폐 율 : 26.02%

다. 용 적 률 : 299.98%

라. 높 이 : 64m

마. 연 면 적 : 55,870.61㎡

바.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·복리시설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구분	형별	전용면적(㎡)	세대수			유형	구성비
			분양	임대	소계		
전용면적 60㎡ 미만	44	44.99	15	25	40	분양 / 임대	33.95%
	59A	59.99	27	5	32		
	59B	59.98	15	5	20		
	59C	59.99	13	5	18		
전용면적 60 ~ 85㎡ 미만	74A	74.99	52	-	52	분양	65.43%
	74B	74.45	13	-	13		
	84A	84.99	107	-	107		
	84B	84.98	40	-	40		
전용면적 85㎡ 초과	114	114.93	2	-	2	분양	0.62%
계			284	40	324	100.00%	

9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종류	규모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내용
소공원	700.0㎡	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기부채납

10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인·허가 등의 제처리사항

- 가. 「주택법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- 나.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- 다. 「도로법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
- 라. 「하수도법」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
- 마. 「하수도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
- 바. 「수도법」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
- 사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,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
- 아. 「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
- 자. 기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 됨

※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주택과(☎2670-366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